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26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6구합9218 경정거부처분 등 취소
원 고	주식회사 [redacted]
피 고	1. [redacted]시장
	2. [redacted]세무서장
변 론 종 결	2017. 4. 11.
판 결 선 고	2017. 4. 2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 [redacted]시장이 2015. 9. 7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5,884,000원, 농어촌특별세 11,294,200원, 지방교육세 22,588,400원, 재산세 24,309,300원, 지방교육세 4,861,86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,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이 2015. 11. 16.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51,535,851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10,307,170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26

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13. 10. 30. A종중(이하 '이 사건 종중'이라 한다)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2013. 12. 5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25,884,000원, 농어촌특별세 11,294,200원, 지방교육세 22,588,400원, 재산세 24,309,300원, 지방교육세 4,861,860원(이하 '취득세 등'이라 한다)을 신고·납부하였다.

나. 이 사건 종중은 2015. 3. 4. 원고를 상대로 [redacted]지방법원 2015가합15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15. 7. 10. "원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"라는 이유로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원고가 2015. 7. 13. 항소를 포기하여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(이하 '이 사건 확정판결'이라 한다)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. 7. 20. 이 사건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.

다. 원고는 2015. 8.경 피고 [redacted]시장에게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취소 경정을 구하였으나, 피고 [redacted]시장은 2015. 9. 7. "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'취득'에 해당하고, 이 사건 확정판결에 당초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."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26

라. 피고 [redacted]세무서장은 2015. 1. 16. 원고에게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51,535,851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10,307,170원(이하 '종합부동산세 등'이라 한다)을 부과하였다(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틀어 '이 사건 각 처분'이라 한다).

마.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, 조세심판원은 2016. 5. 18.과 2016. 6. 21.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1호증, 을가 제1 내지 4호증, 을나 제1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취득세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,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일인 2015. 6. 1. 기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므로,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.

나. 관계법령

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인정사실

1) 이 사건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을 소송대리하였던 변호사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.

2)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 제출한 답변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26

에 "이 사건 종중이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툴 이유가 없고, 더 이상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사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."라고 기재하였다.

3) 원고는 2013. 10. 3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종중과 사이의 매매계약서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서'라 한다)를 작성하여 피고 [redacted]시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를 첨부하였다.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.

제5조(소유권이전 및 명의)

(1) 본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이 사건 종중의 사정에 의하여 잔금지급기일 이전인 2013. 11. 8.경 이행할 예정으로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(채권자 : 이 사건 종중, 채권최고액 : 7,341,230,000원).

(4) 본 전원주택사업부지 중, 본 계약에 의한 임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전, 답은 원고에게는 현행법상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, 본 계약과는 별도로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지정하는 자간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.

4) 원고는 2013. 12. 5.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이 사건 종중에게 채권최고액 7,341,230,000원,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.

5) 원고는 2013. 10. 30. 이 사건 종중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및 [redacted]시 B 외 6필지의 전, 답에 관하여 부동산 매매예약서(이하 '이 사건 매매예약서'라 한다)를 작성하였는데, 위 매매예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.

제3조

(1) 정식매매계약 체결 담보조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에게 400,000,000원을 예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.

(2) 원고의 사정(개발행위 제한, 인·허가 제한 및 군부대 협의를 받지 못하는 사정 등) 등으로 정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종중은 원고에게 위 1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26

항의 400,000,000원을 반환한다.

6) 원고는 2013. 10. 30. 이 사건 종중에 40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가, 2015. 4. 14.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갑 제2, 7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라. 판단

1) 구 지방세기본법(2014. 1. 1.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51조 제2항은 "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되어 있으며, 제1호에서 '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(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)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'가 규정되어 있다. 이처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,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'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'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(대법원 2011. 7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26

28.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).

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,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,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(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12750 판결 등 참조).

2)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,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의 위조행위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후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취득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에는 영향이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.

① 이 사건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을 소송대리하였던 변호사들이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다. 또한 원고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 사실이나 매매계약의 무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투명하게 다투어지거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, 그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이 점이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조에 따른 매매계약의 무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.

②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26

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종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400,000,000원을 지급받았는데, 이는 매매계약서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, 원고가 이 사건 종중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.

3)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효두

판사 박종환

판사 박주영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26

별지1

목 록

1. [redacted]시 C 임야 6,300㎡
2. [redacted]시 D 임야 7,210㎡
3. [redacted]시 E 임야 3,598㎡
4. [redacted]시 F 임야 522㎡
5. [redacted]시 G 임야 71,724㎡ 중 71,724분의 17,1350 지분
6. [redacted]시 H 임야 5,810㎡
7. [redacted]시 I 임야 5,100㎡. 끝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26

별지2

관계법령

■ 구 지방세법(2014. 1. 1.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6조(정의)

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취득"이란 매매, 교환, 상속, 증여, 기부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, 건축, 개수(改修), 공유수면의 매립,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, 승계취득 또는 유상·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.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① 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, 선박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(이하 이 장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

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「민법」,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건설기계관리법」, 「항공법」, 「선박법」, 「입목에 관한 법률」, 「광업법」 또는 「수산업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·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. 다만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.

제107조(납세의무자)

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(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)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,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1.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

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제114조(과세기준일)

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5-26

■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4. 8. 12.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20조(취득의 시기 등)

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1. 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
2.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(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). 다만,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·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·인낙조서·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⑪ 제1항,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■ 구 지방세기본법(2014. 1. 1.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51조(경정 등의 청구)

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1. 최초의 신고·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(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)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

■ 종합부동산세법

제3조(과세기준일)

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「지방세법」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.

제12조(납세의무자)

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
1.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. 끝.